#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9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박지혜·김기표·김 윤

권향엽 · 정진욱 · 박희승

황정아 • 박해철 • 민병덕

강준현 • 박정현 • 이재관

민형배 · 김문수 · 이건태

채현일 • 서영석 의원

(17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(이하 "다자녀가정"이라 함)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.06명이 감소한 0.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,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,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 여하려는 것임(안 제36조 및 제49조의4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 중 "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"을 "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, 다자녀가정(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"으로 한다.

제4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 항) 중 "수급자,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의 모든 자녀"를 "수급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대통령령으로"를 "다자녀가정의 학 생 및 대통령령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 을 "제3항"으로 한다.

① 재단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무상지급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자금 무상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6조(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) 제36조(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)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, 다자 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 녀가정(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자금 무상지급(제2조제1호나목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)을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정(이하 "장학금계정"이라 한 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-다)을 설치한다. 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 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 ① 재단은 다자녀가정의 모든 <신 설>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무상지 급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① 재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. 출산 또는 -----수급자-----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 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

대통	통령령으로	정하는 ㅁ	대학생에
게	우선적으로	학자금	지원을
할	수 있다.		

② 재단은 <u>제1항</u>에 따른 학자 금 지원을 위하여 <u>대통령령으</u> 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 게 학자금 지원 자격, 신청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<u>제2항</u>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
<u>나</u>
자녀가정의 학생 및 대통령령
<u>으로</u>
④ 제3항